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가합26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

피고B

변론 종결 2020. 12. 17.

판결 선고 2021. 1. 1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87,738,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. 6. 5.부터 2010. 1. 15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(다만, 망 C에 대한 부분 제외)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재판장판사김동국

판사김영욱

판사신세아

별지